

	<b>보도자료</b>	
<b>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b>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책임자	선욱 과장(2156-9910)	담당자	홍문기 사무관(2156-9915)
	정용원 국장(3145-7700)		박권추 부국장(3145-7702)
	이봉현 국장(3145-7290)		김영기 팀장(3145-7308)
			황승기 팀장(3145-7313)
배포일	2015. 7. 15. (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7매

## 제 목 :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7. 15. 제13차 회의에서 (주)동양 등 5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2015.7.15. 의결)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b>(주)동양레저</b></p> <p>결산기 : 2010.12.31. 2011.12.31. 2012.12.31.</p> <p>비상장법인</p> <p>업종: 골프장운영업</p>	<p><b>【감사인】</b></p> <p>① 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의 계정분류 오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1년 215,990백만원, '12년 205,085백만원)</p> <p>- 거치기간이 만료된 회원보증금의 경우 회계기준 상 유동부채로 분류해야할 대상임에도, 감사인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1년 70,103백만원, '12년 52,578백만원)</p> <p>- 감사인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 평가나 손상징후 존재 여부 검토 등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③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2년 314,204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수집을 소홀히 하여,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주식에서 누락한 사실 등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④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2년 174,600백만원)</p> <p>- 감사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대규모 자금거래를 관련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기타포괄이익 재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0년 26,986백만원)</p> <p>- 피매수회사 주식과 관련된 기타포괄이익은 매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대상이나, 회사가 관련 회계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다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b>삼정회계법인 :</b></p> <p>-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50%</p> <p>-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p> <p><b>공인회계사 : 1인</b></p> <p>- 직무정지건의 6월</p> <p>-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1년</p> <p>-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p> <p>- 직무연수 12시간</p> <p><b>공인회계사 : 2인</b></p> <p>-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1년</p> <p>-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p> <p>- 직무연수 6시간</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b>동양인터내셔널(주)</b></p> <p>결산기 : 2012.12.31.</p> <p>비상장법인</p> <p>업종: 고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p>	<p><b>【감사인】</b></p> <p>①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403,225백만원)</p> <p>- 감사는 회사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수집을 소홀히 하여,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주식에서 누락한 사실 등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②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197,900백만원)</p> <p>- 감사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대규모 자금 거래를 관련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12년 4,254백만원)</p> <p>- 감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여 회사가 000 지분의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b>한영회계법인 :</b></p> <p>- 손해배상공동금추가적립 30%</p> <p>-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p> <p><b>공인회계사 : 1인</b></p> <p>- 직무정지건의 6월</p> <p>-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p> <p>-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3년</p> <p>- 직무연수 12시간</p> <p><b>공인회계사 : 1인</b></p> <p>-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p> <p>-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1년</p> <p>- 직무연수 6시간</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동양            결산기 : 2012.12.31.            유가증권상장법인            업종 : 시멘트제조업 등</p>	<p><b>【감사인】</b></p> <p>① 장기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재무제표 5,132백만원)</p> <p>- 감사인은 채권회수가 불확실하여 '11년까지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했던 종속기업 장기대여금에 대해, '12년 결산시,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하였음에도, 근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② 골프회원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연결재무제표 14,479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관계회사 골프회원권의 공정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근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회사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손상차손 검토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연결재무제표 5,056백만원)</p> <p>- 감사인은 처분이 불확실한 토지 등에 대해 회사가 객관적으로 보기 곤란한 근거로 이연법인세부채를 환입하였음에도, 근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④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연결재무제표 17,251백만원)</p> <p>- 감사인은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회사가 추정된 사업수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함에도, 사업진행과정 및 비용의 합리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재무제표 185,790백만원)</p> <p>- 감사인은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차입금 185,790백만원이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누락되었음에도, 동 주식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⑥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효과            ('12년 연결재무제표 50,604백만원)</p> <p>- 감사인은 종속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b>한영회계법인 :</b></p> <p>- 손해배상등기금추적 20%            -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p> <p><b>공인회계사 : 1인</b></p> <p>-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b>동양시멘트(주)</b></p> <p>결산기 : 2012.12.31.</p> <p>코스닥 상장법인</p> <p>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p>	<p><b>【감사인】</b></p> <p>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재무제표 29,400백만원, 연결재무제표 100,929백만원)</p> <p>- 감사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물품금액 및 자금거래 중 일부를 관련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②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연결재무제표 21,330백만원)</p> <p>- 감사인은 담보제공내역 주식검토시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해외종속회사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총자산 담보제공내역을 주식에서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③ 골프회원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연결재무제표 6,222백만원)</p> <p>- 감사인은 관계회사 골프회원권이 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사업부 전체의 사용가치와 같이 평가하여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④ 해외소재 광구관련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재무제표 5,894백만원, 연결재무제표 18,798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의 해외광구 투자예산에 대한 검토,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액 송금여부, 해외광구 관련 유·무형자산의 취득·처분 테스트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해외광구 관련 유·무형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b>한영회계법인</b></p> <p>- 손해배상공통금추적 30%</p> <p>-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p> <p><b>공인회계사 : 1인</b></p> <p>-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p> <p>-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p> <p>- 직무연수 8시간</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b>동양네트웍스㈜</b>            결산기 : 2012.12.31.            유가증권상장법인            업종 : 상품종합모매업</p>	<p><b>【감사인】</b></p> <p>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연결재무제표 113,718백만원)</p> <p>- 감사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 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②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별도재무제표 3,127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의 연결대상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및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상태임에도 자금대여계약서 및 대여금의 취급·상환 내역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b>삼일회계법인</b></p> <p>- 손해배상공동금추징 30%            -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p> <p><b>공인회계사 : 2인</b></p> <p>-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p>

## ※ 주요 제재 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